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“법 제9조제2항 단서”를 “법 제9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46조를 제48조의4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46조) 중 “법 제49조 및 영 제18조”를 “법 제51조의5 및 영 제20조의6”으로 한다.

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3(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51조의4에 따라 마약류 사용·확산 및 예방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, 전화조사, 온라인조사, 방문조사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마약류 예방교육 현황 및 효과성에 관한 사항
2.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마약류에 대한 지식·태도에 관한 사항
3. 마약류 사용 경험, 원인 및 정도에 관한 사항
4.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성에 관한 사항
5. 마약류 예방·재활 관련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·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)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 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 호서식의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양도계약 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8조(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) 법 제9조제2항제1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6조(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)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.	제48조의4(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) 법 제51조의5 및 영 제20 조의6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제48조의3(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 용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법 제51조의4에 따라 마약류 사용·확산 및 예방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 야 한다.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, 전화

조사, 온라인조사, 방문조사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마약류 예방교육 현황 및 효과성에 관한 사항

2.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마약류에 대한 지식·태도에 관한 사항

3. 마약류 사용 경험, 원인 및 정도에 관한 사항

4.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성에 관한 사항

5. 마약류 예방·재활 관련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·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